

◇ 재류수속안내 ◇

[목차]

1. 거주지의 신고	1
2. 재입국 허가	1
3. 재류 기간 갱신	1
4. 재류 자격 변경(단기 체재)	2
5. 그 외 · 입국관리국 지도	3

1. 거주지의 신고

일본 입국 시 재류 카드가 교부된 외국인은 거주지를 정한 후 14 일 이내에 거주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.

[취급 기관] 거주지의 관할 구청 및 시청

[제출 서류] · 신청서 (관공서 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.)

· 재류 카드

* 거주지를 변경했을 경우 변경 후의 거주지로 이전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재류 카드를 지참 후 이전한 곳의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변경 수속을 실시합니다.

* 거주지 이외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 (예) 이름 변경 등)는 14 일 이내에 거주 지구 관할의 입국관리국에 방문하여 변경 수속을 실시합니다.

* 재류카드는 여권 대신에 항상 휴대해 주십시오. 재류 카드를 분실했을 시에는 먼저 거주 지역 혹은 분실한 장소의 근처에 있는 경찰서/과출소에 가서 「유실신고서 / 도난신고서」를 제출하고 14 일 이내에 거주 지구 관할의 입국관리국에서 재교부 수속을 해야 합니다.

2. 재입국 허가

유효한 여권 및 재류 카드를 소지한 유학생이 일본을 출국할 경우 (일시 귀국 또는 해외 여행 등) 출국 후 1 년 이내에 (재류 기한이 출국 후 1 년 미만의 경우는 재류 기한까지) 재입국하는 경우는 재입국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.

3. 재류 기간 갱신

일본 상륙 시 인정된 당초의 재류 기간 종료 후 진학해서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재류 기간이 종료 되기 전에 유학 비자의 갱신 수속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.

단, 재류 기간의 갱신은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되는 것이 아닙니다. 학교 출석률, 자격 외 활동 상황, 또 모국에서의 송금 상황도 심사됩니다.

※신청은 재류 기간이 종료되는 날에서 약 3 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.

[취급 기관] 거주 지구 관할의 입국관리국

[필요 서류] ·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

(입국관리국에서 배포. 교무실에도 있습니다.)

※신청인 본인이 작성하는 신청서와 소속학교에서 작성하는 신청서 2 종류를 입국관리국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. BIL 재학중에 재류 기간을 갱신하는 학생은 교무실에서 소속학교 작성분의 신청서를 준비하니 교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. 교무실에서 작성하는 신청서는 신청 후 3일정도 소요됩니다. (토, 일, 휴일 제외) 갱신 기간에 늦지 않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- 여권
- 재류 카드
- BIL 의 졸업 예정 증명서
- BIL 의 성적/출석 증명서
- 진학하는 학교 (대학, 전문학교 등)의 입학 허가서
- 경비 지변 능력을 나타내는 자료

※일본 체재중의 학비, 생활비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거를 남길 수 있도록 반드시 기록을 남겨 두도록 합니다.

- 수수료 (수수료 납부서에 ₩4,000 의 인지를 붙입니다. ※ 갱신 허가 후 납부)

4. 재류 자격 변경(단기 체재)

BIL 졸업 후 귀국은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귀국 준비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일본에 체재해야 하는 경우에는 “단기체재” 비자로의 변경이 필요합니다.

단기 체재 비자는 신청이 허가가 된 날로부터 재류기간이 최장 90 일간이지만, (현재 유학 비자의 재류 기한부터 90 일이 아닙니다.) 상기의 이유와 같은 경우에는 15~30 일간의 재류 기간이 허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단기 체재의 재류 기간은 재학중의 출석률이나 제출한 경비 지변 서류 등이 심사되어 허가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
[취급 기관] 거주 지구 관할의 입국관리국

[필요 서류] • 재류 자격 갱신 허가 신청서
(입국관리국에서 배포. 교무실에도 있습니다.)

- 여권
- 재류 카드
- BIL 의 졸업 예정 증명서
- BIL 의 성적/출석 증명서
- 단기 체재로 재류하는 동안의 경비 지변 능력을 나타내는 자료
- 귀국일을 증명하는 자료 항공권(예약표) 등
- 수수료 (수수료 납부서에 ₩4,000 의 인지를 붙입니다. ※ 변경 허가 후 납부)

※ 1.5 년 코스의 학생은 졸업 후 유학 비자의 재류 기한이 남아 있더라도 신속하게 일본에서 출국해 주십시오. 만약 3 개월 이상 일본에 체재한 경우는 불법 체류로 간주됩니다.

5. 그 외

BIL 졸업 후 취직 등을 하는 경우는 “취로”로 재류 자격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. 취로 비자는 직종에 의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취직한 곳의 담당자와 상담하여 수속을 진행해 주세요. 또한 재류자격변경은 졸업식 날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.

☞ 각종 신청 용지 등은 입국관리국의 홈페이지에서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.

<https://www.moj.go.jp/isa/index.html>

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



주 소 : 〒108-8255 東京都 港区 港南 5-5-30
 전화번호: 0570-034259
 03-5796-7125 (FAX)